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월드에셋대부(주)

2. 제재조치일 : 2026. 7. 13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임 원	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(문책경고 상당) 1명

4. 제재대상사실

- ☐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3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는 대차대조표상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해서는 아니됨에도

월드에셋대부(주)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(2022년말 15.5배, 2023년말 26.3배, 2024년말 56.3배)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법규 >

1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3
2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4